

산재예방요율제로 재해도 줄이고, 보험료도 인하받고

산재예방요율제는 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거나 사업주 교육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 산재보험료율 인하율 및 인정 유효기간

구분	산재보험료율 인하율	인정 유효기간
위험성평가 인정	20%	3년
사업주교육 인정	10%	1년

최저임금 인상 부담! 일자리 안정자금에 해결해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사업주)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 (근로자)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5인 미만 사업장 오프라인 신청가능)

명칭	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근로복지공단EDI	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EDI	http://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EDI	http://edi.np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EDI	http://www.ei.go.kr	한국고용정보원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 신청업무는 사무대행기관 활용 가능(온라인 사이트에 안내)
- 신청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로 문의

지역별 제출 및 문의처

알선기관명	기관주소	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7~8층)	02-6711-2842
서울북부지사	서울 중구 칠레로 42 7층	02-3783-8316
강원지사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2층	033-815-1011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 3층	033-820-2513
부산지역본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052-226-0525
울산지사	울산 남구 중앙로 208번길 5	052-226-0522
경남지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9	055-269-0556
경남동부지사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4층	055-371-7524
광주지역본부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82 8, 9, 11층	062-949-8741
전북지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선로 251 4층	063-240-8533
전북서부지사	전북 군산시 자유로 482	063-460-3621
전남동부지사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35	061-689-4951
전남지사	전남 무안군 후광대로 242 7층	061-288-8705
제주지사	제주도 제주시 연설로 473 4층	064-797-7505
충북지역본부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032-510-0512
경기지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0층, 13층)	031-259-7125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1층	031-828-1919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 2층	031-481-7514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쇠물로 17번길3 2층	031-785-3321
경기충북지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 3층	032-680-6518
대구지역본부	대구 중구 국제보성로 648 19, 20층	053-609-0524
대구서부지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5층	053-650-6832
경북동부지사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	054-271-2035
경북지사	경북 구미시 3공단 1로 312-23	054-478-8013
대전지역본부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	042-620-5614
충북지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 161번길 20 3층	043-230-7153
충남지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창로 215 3층	041-570-3423

2018-안전-30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산업재해를 예방합시다!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개요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이란?

- 모든 근로자가 안전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이 따르는 작업을 제공하는 자는 상응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도 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 협력업체는 모기업(원청)에 비해 근로자 안전·보건 투자여력 및 정보가 부족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원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이에 모기업(원청) 주도로 협력업체와 함께 수립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협력업체에 위험성평가와 기술지원 활동 등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안전보건을 개선시켜 줌으로써 협력업체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향상 등 원·하청 안전보건 격차 해소 및 공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대상

· (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및 협력업체

*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

- 사내 협력업체와 유해·위험물질 제조·사용 또는 정비·보수 등 고위험작업 사외 협력업체는 모두 참여

「유해·위험물질 제조·사용 사업장」의 범위

- ①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물질(51종)을 규정량 미만으로 제조·사용하여 PSM 비대상으로 분류되는 사업장
- ② 고독성(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78종) 제조·사용 사업장
- ③ 최근 10년간 직업병 발생 빈도가 높은 삼산화안티몬, 클로로포름, 시안화수소, 메틸알코올,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 제조·사용 사업장

· (업종) 제조업, 전기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 (선정) 사업대상 선정 기준을 참고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의하여 선정

사업대상의 선정 기준

- ① 협력업체 중대재해 발생, 재해다발 또는 사회적 이슈가 된 모기업
- ② 100인 이상 모기업 중 협력업체 다수 보유사업장
-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기업
- ④ '12 ~ '17년도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모기업

프로그램 접수 및 심사

- 참여 신청기간 : '18. 3. 2(금) ~ 3. 16(금), 2주간
- 접수처 : 모기업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 심사 및 승인 : '18. 3. 30(금)까지 완료

참여 사업장에 대한 등급평가 및 혜택

- 전국 상위 10%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16. 6. 30. 훈령 제186호) 제10조1항7호에 따라 참여 다음년도에 정기감독 일부 유예가 적용
- A등급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
 - 정부포상(산재예방 유공)시 우선 추천
 - 다음년도 KOSHA 18001 연장 또는 사후심사비 할인(50%)지원
- 프로그램 참여 협력업체
 - (50인 미만 협력업체) KOSHA 18001 실태심사비 면제
 - (모든 규모 협력업체) KOSHA 18001 컨설팅비용 지원
 - (사외 협력업체) 용자 및 클린사업 재정지원 대상 선정시 우대
 -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대상 선정시 우대

프로그램 추진 우수사례

· 프로그램 참여사업장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7월중)

※ 세부 일정이 확정되면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및 사업장에 안내 예정

· 우수사례 홈페이지 게시



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사업안내/신청



산업안전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추진사례



프로그램 추진 절차 및 내용

사업 안내·설명회

- 대상 사업장에 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고용노동부, 공단]
- 사업취지, 추진 절차 및 내용, 참여혜택 등 설명회 개최[고용노동부, 공단]

프로그램 작성

- 사내·외 협력업체와 공생협력단 구성 및 프로그램 작성[모기업]
- 참여대상 협력업체
 - 사내 협력업체[전체], 사외 협력업체[자발적 참여업체]
 - ※ 단, 사외 협력업체 중 유해 화학물질 제조·사용, 정비·보수 등 고위험직업 업체는 모두 포함

참여 신청·심사 (계획수립 컨설팅)

- 프로그램 승인 신청서 제출[모기업]
- 프로그램 심사 후 승인, 보완요구, 불승인[고용노동부, 공단]
 - ※ 당해년도 신규참여 희망사업장이 요청 시 계획수립 컨설팅 실시[공단]

위험성평가

- 협력업체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및 평가 실시 지원[모기업]
 - 사전에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자체 교육 실시 (필요시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외부교육 이수)

위험성 감소계획 제출·이행

- 협력업체의 위험성 감소를 위한 개선계획 수립 후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모기업]
 - ※ 협력업체에 대한 모기업의 기술, 예산 등 지원계획 포함
- 협력업체에 대해 개선계획 이행을 필요한 사항을 지원[모기업]

현장 기술지도

- 프로그램 세부 추진방안, 협력체계 등 관련 현장 기술지도[공단]

추진실적 제출

- 프로그램 추진실적을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모기업]

확인 기술지도

- 제출된 추진실적 관련 현장 확인[공단]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결과, 현장 기술지도내용 이행여부 확인

평가 및 등급부여

- 사업장별 추진실적 평가 및 등급부여[고용노동부, 공단]



위험성평가 안내

위험성평가란?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 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사전준비



유해·위험
요인파악



위험성 추정



위험성 결정



위험성감소
대책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
- 자세한 내용은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kras.kosha.or.kr>) 참조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총 금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의 건설공사
- ※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 수를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을 시 혜택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 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위험성평가 인정이 클린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평가지표

모기업 부문

A 공생협력 추진의지

- ➔ 공생협력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모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 수준

모기업·협력업체 부문

B 공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적정성

- ① 공생협력 운영 방침·규정 수립 및 전달·이행확인 체계의 적정성
- ② 공생협력단 구성 및 활동의 적정성
- ③ 공생협력을 위한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C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 ① 위험성평가 계획
- ② 위험성평가 이행
- ③ 위험성평가 이행 확인
- ④ 지속적 개선
- ⑤ 기록 및 관리

D 공생협력 프로그램 성과

- ① 계획대비 이행도
- ② 적용 법규의 준수 정도
- ③ 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준수 정도
- ④ 만족도 조사 및 환류
- ④-1. 협력업체 대표자 및 근로자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 ④-2. 협력업체 애로 및 개선요구 사항의 반영 수준

협력업체 부문

E 협력업체 자율안전보건 실행수준 및 재해발생 수준

- ① 참여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인정(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포함) 획득비용
- ② 재해발생 수준
- ②-1. 참여 협력업체의 전년대비 재해를 감소
- ②-2. 참여 협력업체의 참여년도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여부

※ 평가지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산재예방요율제 안내

산재예방요율제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경우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

• 적용 대상

–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 일괄가입사업장 각각의 사업개시연도별 상시근로자수의 합이 50명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 적용 방법

산재보험료를 인하율	사업주교육 인정 : 10%
	위험성평가 인정 : 20%

※ 위험성평가 인정과 사업주교육 인정 중 인하율이 큰 보험료를 적용하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기간만큼 일괄 계산하여 산재보험료를 인하 (관련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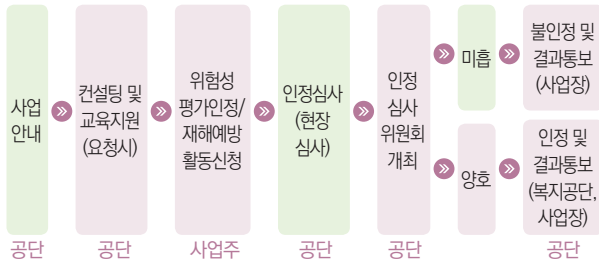
• 인정 유효기간

– 위험성평가 인정 3년, 사업주교육 인정 1년(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 연도부터 적용)

• 업무처리절차

– 재해예방활동 신청(사업주) → 재해예방활동 수행(사업주) → 재해예방활동 이행여부 확인 및 인정(안전보건공단) → 보험료율에 반영 (근로복지공단)

「위험성평가」재해예방활동 인정 절차



「사업주교육」재해예방활동 인정 절차



※ 산재예방요율제(업종 및 요율)는 고용노동부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클린사업 및 용자사업 안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지원

구분	클린사업장 인정 (전부개선)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일부개선)
지원 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 체납이 없는 근로자수 50인 미만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고용노동부 감독·점검 및 공단·민간 위탁기관 기술지원 사업장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체납이 없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제외) • 노동부·공단의 감독 또는 기술지원 사업장 •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사업장
지원 조건	투자 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클린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	사망사고 예방품목(이동식크레인 방호장치 등)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공단의 점검결과 개선이 시급한 위험 요인을 개선할 경우
최대 지원 금액 및 지원 비율	사업장 당 2,000만원까지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 고용중개 사업장(고용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내 추가지원)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 고용노동부에서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공단 판단비용의 50%까지 ※ 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소요 비용의 70%까지 지원	사업장 당 2,000만원까지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는 차대번호로 구분하고 동일설비에 중복지원 불가) 공단 판단비용의 70%까지

※ 공통조건 : 산재보험보험가입 및 보험료 완납 조건, 신용평가기관의 조결과 “양호” 조건

• 주소: <http://clean.kosha.or.kr>

산재예방시설자금 용자지원

•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위하여 장기 저리 조건의 산업재해예방시설 용자금 지원

구분	용자지원내용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기관에 한함) – 용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원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용자금액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지원조건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지원대상 품목 및 유의사항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 유해 위험 기계·기구(브레스, 전단기, 크레인, 산업용 로봇 등) –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 국소배기 및 집진시설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 등 유해인자 제거, 개선, 방지 시설 – 보호구, 방호장치 제조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및 설비 – 검사,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 필요한 각종 기계·기구 S마크 인증현황 – 근로자 건강증진 시설 장비 – 안전인증(S마크)을 받은 기계·기구 및 인증에 필요한 설비·장비 등 (공작기계 등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 기구) – 유의사항 • 법적 안전인증 대상품목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감정합격품에 한함 • 설비의 내구성,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신뢰확보가 어려운 중고설비 및 재고설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